

[2025년도(제13회) 행정사실무법 총평] -조장형

[전체평]

이번 2025년도 제12회 행정사실무법 시험문제의 수준은 작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1-1]

행정심판법의 사례문제입니다.

물음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가구제포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예상문제로 강의시(진도별 예상문제 풀이 등)에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문제로 강조한 바 있고, 사례/단문집 사례15-물음2(110쪽)에 소개된 문제와 사실상 동일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① 단문문제, ② 진도별 모의고사-7회[2025.7.27. 사안이 비슷함]에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목차 순서는 (1)문제의 소재, (2)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3)사안의 해결로 마무리하였다면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문제 1-2]

행정심판법의 사례문제입니다.

인용재결(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제7회,제11회)에 이미 선보인 바 있고, 강의시(진도별 예상문제 풀이 등)에도 재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문제로 강조하였던 문제입니다. 또한 사례/단문집 사례14-물음2(107쪽)에 소개된 문제와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① 목차잡기+단문정리 제6회[2025.4.6]-문제1, 문제2, ② 진도별 모의고사-5회[2025.7.13.]-문제3에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목차 순서는 (1)문제의 소재, (2)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3)사안의 해결로 마무리하였다면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문제 2]

행정사법령상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관한 문제로 이 문제는 기출문제(제5회)에 이미 선보인 바 있고, 강의시에도 재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문제로 강조하였던 문제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0회[2025.9.14.]-문제2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차는 (1)업무신고, (2)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3)업무신고의 수리거부, (4)별칙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 3-1]

비송사건절차법상 재판의 취소·변경과 관련된 취소·변경의 가부, 사유, 시기, 취소·변경할 수 있는 법원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예상문제로 강의시에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문제로 여러번 강조한 바 있고, ①목차잡기+단문정리 제8회[2025.4.20]-문제2, ②진도별 모의고사 7회[2025.7.20.]-문제2, ③실전 모의고사 4회[2025.8.24.]-문제3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차는 (1)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변경 - ①취소·변경의 가부 (=취소·변경의 자유의 원칙), ②취소·변경의 사유, ③취소·변경의 시기, ④취소·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의 순서로 기술한 후, (2) 항고에 의한 취소변경으로 마무리하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 3-2]

비송사건절차법상 재판의 취소·변경과 관련하여 취소·변경의 효과, 취소·변경의 제한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 [문제3-1]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목차는 (1) 재판의 취소·변경의 효과, (2) 취소·변경의 제한 - ①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 ②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문제 4]

비송사건절차법상 송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의시에 예상문제로 출제의 가능성을 여러번 강조한 바 있었던 문제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2회[2025.8.17.]-문제4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차는 (1) 의의, (2) 원칙(고지방식의 자유), (3) 예외-기일송달, 공시송달, (4) 송달의 방법 순으로 기술하였다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실무법 기출문제 및 답안해설 - 조장형 행정사

【문제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A공사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甲은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甲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인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와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공사는 甲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40점)

물음1) 甲이 A공사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 을 다투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가구제 포함)을 설명하시오. (20점)

물음2) 甲은 위 물음 1)의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A공사를 상대로 '주택 특별공급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A공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甲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러나 A공사는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재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상 수단은 무엇인가? (20점)

[문제 1-1]

I.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甲의 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공사가 아무런 회신을 하고 있지 않음은 부작위에 해당한다. 본 사안의 쟁점은 甲의 주택 특별공급신청에 대한 A공사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대한 검토이다.

II.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1.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법 제5조제3호).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신청에 따른 처분재결(형성재결)과 신청에 따른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이 있다(법 제43조제5항). 처분명령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며(법 제49조제3항), 만약 당해 행정청이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¹⁾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도 할 수도 있다.

2. 가구제

(1) 집행정지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이다

1) 본 사안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접처분 가능(재량행위에서는 직접처분×)

(2) 임시처분

임시처분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행하는 假救濟 수단을 말한다. 다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동법 제31조제3항) 결국 집행정지로 구제될 수 없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에만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3) 사안의 적용

본 사안은 부작위에 대한 가구제 수단의 문제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정지는 포섭되지 않는다. 즉, 甲은 A공사의 부작위에 대해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III. 사안의 해결

A공사의 부작위가 문제되므로 甲은 주택특별공급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A공사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고, 가구제 수단으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I. 문제의 소재

의무이행심판청구에서 인용재결인 처분명령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무엇이고, 특히 간접강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1.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재결

신청에 따른 처분재결(형성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이 가능하다. 처분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결 자체에 의해 당해 처분청의 매개 없이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가장 직접적인 구제가 된다.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 처분명령재결에 의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 제3항). 즉, 이행재결로써 당해 처분청에게는 재처분의무가 발생한다.

2.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1)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만일 당해 행정청이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제1항 본문). 또한 청구인은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50조의2 제1항).

(2) 직접처분

행정청이 재결(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직접처분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후, 그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이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간접강제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피청구인)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간접강제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처분재결 및 직접처분의 한계

사안의 경우와 같은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성질상 처분재결은 적절하지 않고, 처분명령재결을 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동법 제50조 제1항 단서).

3. 사안의 경우

설문에서 甲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A공사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여 그 이행(정보공개)을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A공사는 여전히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甲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 또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Ⅲ. 사안의 해결

甲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 또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성질상 직접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甲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문제 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기준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2.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

- (1)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 (3)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 (4)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3.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1) 수리거부 사유

시장 등은 행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수리간주

시장 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①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② 행정사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3) 이의신청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벌칙

행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 3】 법원은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甲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점)

물음 1)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추후 위 과태료 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지 가부, 사유, 시기,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설명하십시오. (10점)

1.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재판의 취소·변경

(1) 취소·변경의 가부 (=취소·변경의 자유의 원칙)

법원(제1심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2) 취소·변경의 사유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이다.

(3) 취소·변경의 시기

항고법원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능하다.

(4) 취소·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

원재판을 한 제1심법원에 한한다.

2. 항고에 의한 취소·변경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으며(법 제20조제1항), 항고법원은 심리 후 원심법원의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원심법원의 원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물음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위 과태료 재판을 취소·변경한 경우의 효과와 취소·변경의 제한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1. 재판의 취소·변경의 효과

재판이 취소·변경된 경우 재판의 소급효 여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비송사건으로서 일단 효력이 생긴 비송사건의 결정이 사후에 취소되더라도 권리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송사건 본래의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다.

2. 취소·변경의 제한

①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원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법 제19조 제2항).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각하 외에 기각된 재판을 포함한다.

②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법 제19조 제3항).

【문제 4】 비송사건절차법상 송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의의

송달이란 소송절차상 필요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거나 교부를 받을 기회를 주는 법원의 통지행위를 말한다.

2. 원칙(고지방식의 자유)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법 제18조 제2항 본문). 따라서 재판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3. 예외

(1) 기일통지

당해사건으로 출석한 자가 아닌 경우에 기일의 통지는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써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법 제18조 제2항 단서).

4. 송달의 방법

비송사건절차에서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를 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는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송달기관, 방식, 촉탁, 효력 등은 모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우편송달, 송달함송달,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다.